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의 내용 및 처리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방법 신설(안 제5조 신설)

○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확인방법을 마련함

나.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신설)

○ 청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공개청원을 접수한 경우 공개 여부 결정 제외 사유 및 공개청원의 국민의견 수렴 규정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신설)

- 청원사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라.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절차에 온라인청원시스템과 공개청원 사항 추가(안 제11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등의 통지 사항에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추가함
- 청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 공개청원에 관한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근거 규정 마련함

4.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청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의 통지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
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관
리해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중 “우편”을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하
고, 제8조(종전의 제6조) 본문 중 “제8조,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4조”
를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1. 청원내용
 2. 의견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방법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중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종결 또는 이송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 기한의 통지
6.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7.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8.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제2항(중전의 제13조제2항) 중 “우편”을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각급기관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

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 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 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 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 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u></p>
<p><신 설></p>	<p><u>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온라 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u></p> <p><u>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 서의 제출</u> <u>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 서의 접수</u> <u>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u>

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
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
지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
의 공개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5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청원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관계장부에 기재 또는 기록(전산입력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12조,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

--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
-----.

제8조(청원의 접수) -----

-----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신 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1. 청원내용
2. 의견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방법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

제7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등의 통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3.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종결 또는 이송 통지
4.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5. 제6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종결 또는 이송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6. 제12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의 통지

7.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
의신청 접수 통지

8.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신 설>

<신 설>

제8조~12조 (생 략)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6.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
수에 관한 통지

7.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의 통지

8.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
의신청 접수 통지

9.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
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
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
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
야 한다.

제12조~16조 (현행 제8조부터 제
12조까지와 같음)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
-----.

③ (생략) <u>제14조</u>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제18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	
연락처	(02) 3480-1143